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6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 제안이유

-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교 입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군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입학준비금 지원근거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 제4조~제5조)
- 지원절차 (안 제6조)
- 환수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6조제4항 입학준비금 지급 수단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신청서식 중 계좌번호 기재란을 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34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3. 13.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4항에서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경우 지역경제 환류 효과가 제한될 우려와 입학준비금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조문 및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6조제4항 입학준비금 지급 수단에서 “현금” 을 제외하고, 별지 서식의 내용을 수정한다.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현금, 선불카드**”를 “**선불카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지원 절차) ① ~ ③ (생략)</p> <p>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u>현금, 선불카드</u>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선불카드</u> ----- -----.</p>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교명		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	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금액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06.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교 입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군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입학준비금 지원근거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 제4조~제5조)
- 지원절차 (안 제6조)
- 환수 (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입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와 입학준비금의 지급방법(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 다만, 안 제6조제4항에서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경우 지역경제 환류 효과가 제한될 우려와 입학준비금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6조제4항 입학준비금 지급 수단에서 “현금” 을 제외하여, 사업목적과 조례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기존 신청서식 중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사항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534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6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성기,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교 입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군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학준비금 지원근거(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절차(안 제6조)

마. 환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1. 26. ~ 2. 3. 아래표 참조.

조례안(원안)	집행부 의견(인재육성과)	검토 결과
<p>제2조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p>	<p>제2조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학교를 말한다. ⇒사유 제1조(목적)에서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를 관내 학교로 한정하였음.</p>	<p>불수용 집행부 의견인 ‘관내’ 추가 부분은 그 지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특성상 당연히 효력대상은 평창군 관내 학교로 관내를 추가함은 불필요하다 판단되며</p>
<p>제4조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p>	<p>제4조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관내 학생</p>	<p>안제4조제3호관련 안제3호 추가부분은 안제2조 학교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용하지 않음</p>
<p>제4조 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p>	<p>제4조 3.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공업계열고, 마이스터고, 농업수산해양계열고 등 특수목적도등학교 1학생 학년</p>	<p>안제4조제3호관련 안제3호 추가부분은 안제2조 학교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용하지 않음</p>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다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교명		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	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금액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입학축하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비용은 학생 수 × 시군별 평균금액으로 추계
- 추계 결과: 1,315 백만원
 - '27년 291백만원, '28년 281백만원, '29년 264백만원, '30년 233만원, '31년 246백만원
- 재원조달 방안: 지방세 수입

- 붙임 1. 연도·학교별 1학년 학생 수 추계 1부
2. 강원도내 시군별 지원현황 2부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장 이 현 진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91	281	264	233	246	1,315
축하금 지급		291	281	264	233	246	1,315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91	281	264	233	246	1,315
	지방세	291	281	264	233	246	1,3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1」

연도·학교별 1학년 학생 수 추계

(단위: 명, 주민등록 기준)

구분 연도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합계	694	677	621	551	574	
초등학생	158	154	117	115	103	
중학생	242	267	226	194	204	
고등학생	294	256	278	242	267	

「붙임 2」

강원도내 시군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군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군단위 참고	300	400	500	
춘천시	100	-	-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강릉시	200	300	300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300	400	500	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양구군	300	400	500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